

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23호(2009.06.04.)로 중화1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40호(2013.07.25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32호(2014.06.19.)로 중화1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-52호(2015.08.1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-15호(2018.03.15.)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-37호(2018.05.24.), 제2018-38호(2018.05.31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-40호(2019.05.09.)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0-109호(2020.09.24.)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2-66호(2022.04.21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2-981호(2022.07.21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2-120호(2022.10.20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0호(2024.01.11.)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4-67호(2024.07.04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413호(2024.08.22.)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07호(2025.02.27.)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5-36호(2025.04.17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5-44호(2025.05.08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중랑구 중화동 331-1번지 일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하여,
2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26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명칭 :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구역위치 : 중랑구 중화동 331-1번지 일대

나. 구역면적 : 44,555.5㎡

1) 공동주택 획지 : 32,443.7㎡

2) 정비기반시설 등 : 12,111.8㎡(도로 3,244.4㎡, 공원 4,549.7㎡, 녹지 2,999.1㎡, 공공청사 1,199.5㎡, 광장 119.1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장윤석)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23, 4층(논밭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26년 2월 26일

5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

가. 자금운영계획의 총사업비 및 수입추산액

- 실제 집행금액(용역, 공사 등) 반영, 일반분양 수입 증가, 지중화 공사비 추가 등

항 목	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자금운용	총소요사업비(원)	491,382,943,362	562,725,570,133	증) 71,342,626,771
	수입추산액(원)	586,288,637,953	661,115,645,003	증) 74,827,007,050
종전자산평가금액(원)		89,448,157,174	89,448,157,174	변경없음
비례율(%)		106.10	110.00	증) 3.9

6. 관련도서

- 관련도서는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시계획과(☎ 02-2094-2193)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23, 4층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(02-433-1573) 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 끝.